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13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이재관
박지원 · 이주희 · 남인순
박해철 · 허종식 · 박용갑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 · 환경 · 보건의료 · 과학기술 · 공공안전 · 법률 · 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경력 요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최소 인원수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행정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이 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 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 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 ·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 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 거나 위촉하되,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 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 문사회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 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 던 사람 3.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 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 문사회·행정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 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

② · ③ (생 략)	<u>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u> 4. <u>원자력 · 환경 · 보건의료 · 과 학기술 · 공공안전 · 법률 · 인 문사회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 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5. <u>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10 년 이상이 되는 사람</u> ② · ③ (현행과 같음)
--------------------	---